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9.

발 의 자 : 이춘석 · 안호영 · 윤준병
이연희 · 위성곤 · 윤종균
박 정 · 홍기원 · 이정문
황명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,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통보하지 아니하거나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66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2. 제66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2조(과태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1. · 2.</u>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82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1. 제66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<u>2. 제66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</u></p> <p><u>3. · 4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